

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45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3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육성·발전시키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주요기능을 규정함. (안 제3조)
- 나.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자 및 수요처현황 관리, 알선, 기초적상담, 기록유지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다. 자원봉사에 관련된 홍보, 기획, 연구, 조사, 교육, 프로그램 개발 보급,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책 추진 등의 사업내용을 규정함. (안 제5조)
- 라.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원 봉사 전문가 배치를 위한 직원의 자격 및 채용방법과 보수지급 내용을 규정함. (안 제6조, 제7조)
- 마.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.(안 제10조, 제11조)
- 바.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함. (안 제12조, 제13조)

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(이하“봉사센터”라 한다)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치) 봉사센터는 파주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.

제3조 (기능) 봉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파주시민을 대상으로한 자원봉사 신청 접수·배치·상담 및 교육훈련
2. 파주시민을 대상으로한 활동기회 및 체험학습 기회제공
3. 봉사활동 등의 정보제공 및 지원
4. 학생 및 근로자 봉사활동 지도 및 지원
5. 자원봉사단체간 상호교류, 협력 및 정보교환
6. 자원봉사 지도자 육성
7. 지역을 기반으로한 복지교육, 체험학습활동 전개등 중점사업의 실시 추진
8. 기타 봉사활동에 따르는 지원

제4조 (사업) 봉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- 1.자원봉사활동 수급 관리
 - 가.지역내 자원봉사 공급처 및 수요처 발굴·조사 및 정보관리
 - 나.전산통신망 활용, 자원봉사 희망자 모집·배치 및 활동처 알선
 - 다.자원봉사활동 수행자에 대한 공신력있는「봉사증서」교부
- 2.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
 - 가.지역특성과 소요처를 고려한 공익분야 프로그램 보급
 - 나.학생, 주부, 은퇴노인, 직장인등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
- 3.자원봉사 교육·홍보 및 참여분위기 확산
 - 가.자원봉사자 및 중간지도자 교육·지도
 - 나.자원봉사 정보소식지 발간·배포, 캠페인 및 이벤트행사 개최, 유공자 발굴·포상
- 4.공공자원봉사단 운영
 - 가.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 도입
 - 나.복지시설 지원, 방법, 청소년선도, 문화유적보호, 관광안내, 긴급구조, 공원 관리등 공공서비스 지원
- 5.자원봉사활동 정보제공
 - 가.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정보·자료 홍보
 - 나.학생의 경우 학교 및 교육청 등에 정보 제공
 - 다.일손돕기, 위문게회, 캠페인,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활동수요

6.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

- 가. 인증서 발급은 봉사활동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고 공익분야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확인 후 발급
- 나. 기타 개인이나 민간복지단체·기관의 봉사활동에 대하여는 수혜자 또는 수혜기관의 확인에 따라 인증서 발급

7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 (직원) ① 시장은 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최소한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- 1.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중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.
- 2. 자원봉사활동에 경험이 풍부한 자.
- 3. 자원봉사활동 경험자나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취득자.

② 봉사센터에 배치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.

제6조 (운영) ① 시장은 봉사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품 및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봉사센터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 (예산의 집행) ① 예산의 집행은 “파주시재무회계규칙”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관리시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, 보조금에 대하여는 “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”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, 물품구입등 각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“파주시재무회계규칙”을 준용하여 집행한다.

제8조 (봉사단체협의체구성) ① 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봉사단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봉사단체협의체는 자원봉사를 이념으로 조직된 파주시내 사회봉사단체로 구성한다.

③ 봉사단체협의회장 및 임원은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9조 (봉사단체협의회의 기능과 역할) ① 봉사단체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시장이 수립한 자원봉사추진계획의 자문
- 2.파주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원
- 3.파주시 자원봉사 사업과 관련된 단체간 업무 협조 및 정보교환
- 4.자원봉사 사업과 관련된 정책 건의

② 봉사단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한다.

제10조 (보상) 자원봉사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자원봉사자(단체)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제9조에 의하여 징수하는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감면.
2.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제3조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.
3.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제3조1항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의 감면.
4. 파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 초청장 및 입장권 송부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